

경운대학교 교내 이동장치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내에서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내 도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와 전동휠 등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총장은 우리 대학교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학내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운행 전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복지과에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교학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동장치의 통행) 이동장치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제7조(속도 제한 등) 이동장치의 우리 대학교 내 도로 통행 속도는 15km/h 이하로 한다.

제8조(보행자의 보호) 운전자는 우리 대학교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제3장 주차

제9조(주차 장소) 이동장치의 주차는 총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정장소 또는 자전거 거치 장소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인재개발처장은 주차하고 있는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② 인재개발처장은 주차위반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등록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다.) <개정 2022.04.01.>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1조(운전자의 의무사항 등) ①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캠퍼스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안전속도, 보호장구 착용, 소음방지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포트홀, 움푹 팬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이동장치를 떠날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 이동장치를 교내 건물 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야간 운전 시 전조등, 후미등 등 등화장치를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8. 강풍, 강설, 우천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총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인재개발처장은 제1항 각호를 위반한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

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제12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우리 대학교 내 도로에서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는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의 조사) 현장조사 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2. 사고 발생 장소
3. 피해 상황(피해자 수, 피해재산 규모)
4. 사고 신고 경위
5. 사고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6.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6장 기타

제14조(관리부서별 업무) ① 총괄관리부서는 인재개발처 학생복지과이며, 우리 대학교 내 이동장치에 대한 지침 수립 및 교내 주차지역 설정과 주차위반에 대한 지도,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04.01.>

② 기타 업무별 관리부서는 행정지원처 시설과이며, 이동장치의 통행로 및 주차구역 설치 등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제재 등) 이동장치 운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대학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학교 총장은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22.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